

# 가입안내

## 납입기간 및 연금계시나이

구분	납입기간	연금계시나이
1종(무사망형)	일시납 3년, 5년, 7년, 10년(연금지급계시나이-가입나이)년	45세 ~ 85세
2종(기본형)	일시납, 3년, 5년, 7년 10년, 12년, 15년, 20년납	45세 ~ 85세

\*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후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인 경우 연금계시 나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2종(기본형) 20년납의 경우 85세 이후 연금계시 불가.

## 가입나이

구분	적립형	거치형
1종(무사망형)	0세~최대 75세(단, 10년 이상은 0세 ~ 73세까지)	
2종 기본형	일시납	만 15세 ~ 70세
	3년납	15세 ~ 69세
	5년납	15세 ~ 65세
	7년납	15세 ~ 59세
	10,12년납	15세 ~ 55세
15년납 이상	15세 ~ 59세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일시납

### 기본보험료

- 일시납 : 300만원 이상
- 월납 : 3년납 60만원, 5년~12년납 25만원, 15년납 이상은 15만원

# 추가납입·중도인출·선납기능

### 추가납입(적립형, 거치형)

-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 성립후부터 연금계시전 보험기간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입니다.  
**(다만, 연금지급형태가 상속연금형일 경우 연금계시 이후에도 가능 합니다)**

납입한도

- 적립형: [(기본보험료 x 가입후 경과월수)+선납보험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 거치형: 기본보험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여 '납입중지기간' 및 '납입유예 기간'은 '가입후 경과월수'에서 제외함

\* 중도인출금액 부분에 대한 추가납입에 대해서는 기타비용만 부과(최대연도 3만원)

\* 추가납입 시 사입비가 차감됩니다.

### 중도인출

- 연금계시전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 (다만, 보원 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만원 이상 가능하며, 인출시 수수료는 없음. **(다만, 연금지급형태가 상속연금형일 경우 연금계시 이후에도 가능함)**
- 인출 후 해지환급금이 적립형은 1구좌당 200만원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30% 작 최근 금액 이상, 거치형은 일시납보험료의 20%이상이어야 함.

**\* 중도인출시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장래에 해지환급금에서 부가사 입비를 총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선납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가능, 선납보험료는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당에 납입예정일에 대체합니다.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청약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또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진 알릴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여야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피사가 서명한 중요한 사항(계약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 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거 일된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예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보험금을 드리지 않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 로 인한 사고 및 2년 이내에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자별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준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시보유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일의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 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론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집총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해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청약을 할 때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한 경우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적용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장부분에 사용되는 적용은 연복리 2.5%입니다. 다만, 동아율은 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이 상품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내에 연 복리 1.25%, 10년내에 연복리 1.0%, 10년초과 연복리 0.75%입니다.
- **세제혜택**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교제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특직 보정 제외)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당 및 분령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당사보험상담내 : 콜센터 1588-2286 보상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소비자 보호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전화: 국번없이 1332 서울본원: 02)3145-5114 부산지원: 051)606-1702 대구지원: 053)760-4000 광주지원: 062)606-1600 대전지원: 042)479-5151-4 춘천출장소: 033)250-2800 전주출장소: (063) 250-5000 제주출장소: 064) 746-4200 충주출장소: 043-857-9104 강릉출장소: 033-642-1902  
[생명보험협회] 본사(대표전화): 02)2262-6600 수도권지역본부: 02)2262-6570 원주지부: 033)761-9672-3 대구지부: 053)427-8051, 421-1621, 427-2276 중부지역본부: 042)242-7002-4 호남지역본부: 062)350-0111-4 영남지역본부: 051) 638-7801-4 [방카(생명)본부] 02)2002-7880, 7464
-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 heungkuklife.co.kr (당사홈페이지)  
-보험상품광고 공시 : www.klifa.or.kr (생명보험협회)

####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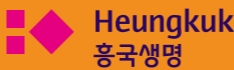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Tel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b>Heungkuk</b> <b>흥국생명</b>	■ <b>흥국생명 고객센터 콜센터</b> 1588-2286 ■ <b>직원전화</b> 1644-5611
	■ <b>흥국생명 방카영업본부</b> 02-2002-7880, 7464
<b>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b> 03184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신문로1가) 02-2002-7000 www.heungkuklife.co.kr	

제작일자 : 2019.02. 25.

준법감시인 심의일 19-FA6-000010(2019. 02. 25) 상품개정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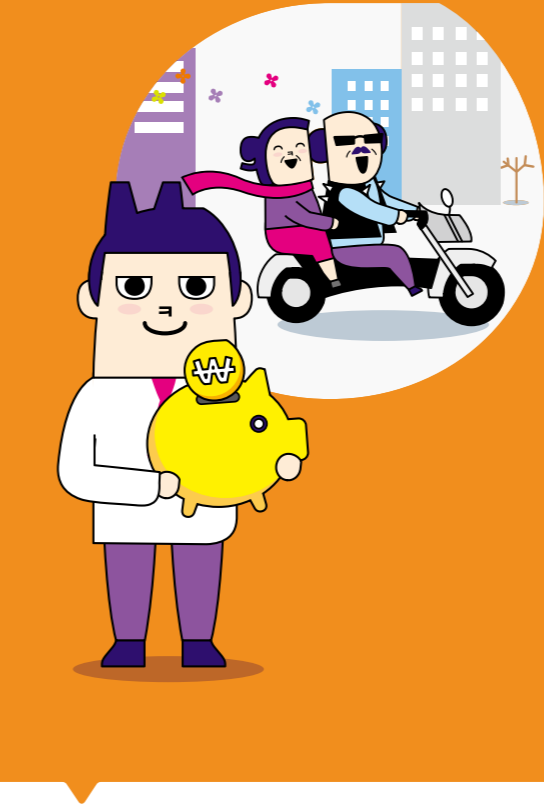
보험사



무배당 **흥국생명**

# 드림연금보험

## 1903



### 주요상품특징

-  사망보장
-  자금활용
-  노후연금

# 상품특징

## 1. "0"세부터 가입가능(1종 무사망형)

- 자녀를 위한 설계가능
- 최고75세까지 가입가능
- 생활자금인출가능

## 2. 연금계시전 사망보험금보장(2종 기본형)

- 기본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 3년납: 기본보험료 x 납입기간 x 12
  - 5년납 이상: 기본보험료 x 납입기간 x 10 (납입기간은 최대10년)
  - ex) 월보험료 100만원, 5년납 가입시: 5천만원
  - 은퇴전 경제 활동기에 보장 강화

## 3. 법인계약 피보험자 변경가능

- 보험기간 중 법인계약에 한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퇴직시 피보험자 변경 가능
  - \* 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유동성 기능(추가납입보험료 / 중도인출)

-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을 활용하여 다양한 플랜이 가능
- 상속연금형일 경우 연금계시 이후에도 가능

## 5. 장기유지보너스

구분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장기유지보너스	
		3년납	5년납 이상
적립형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	0.50%	2.50%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시점의 계약해당일	0.50%	3.00%
거치형	연금지급계시 나이의 계약해당일 (다만,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0.2%×min (20, 연금계시나이-가입나이-10)	
	연금지급계시 나이의 계약해당일	2.50%	

\*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은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입니다.

## 6. 보험료할인/적립금가산혜택

- 기본보험료
  - 35만원 이상시 35만원 초과액의 1.6%
  - 50만원 이상시 기본보험료의 0.4%+50만원 초과액의 0.9%
  - 100만원 이상시 기본보험료의 0.8%+100만원 초과액의 0.45%
  - 300만원 이상시 기본보험료의 1.10%

## 7.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로 안정적연금자산마련

- 2019년 2월 공시이율 연복리 2.55%
- 최저보증이율 5년내에 1.25% 10년내에 1.0% 10년초과 0.75%

## 8. 비교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교세 혜택
- 연금수령시에 연금에 대하여 비교세혜택 (다만, 확정연금형의 경우 10년내에 연금 수령시 세금부과)

# 보장 및 연금액 예시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종류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1종 무사망형	80%이상 재해장애 보험금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장애 분류 표 중 동일한 장애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만)	1,000만원
2종 기본형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기본사망보험금'과 '직전 월계약 예정일 적립액의 110%중 큰금액

\* 적립액이란 계약의 연금계약순보험료(연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약정사입비용 한 금액)를 공시이율로 하여 납입일로부터 경과시점까지 일차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는 차감됩니다.  
 \* 무사망형은 사망시 이미 납입 보험료(중도인출을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기준)와 사망당시의 적립액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본사망 보험금(기본형)  
 - 3년납: 기본보험료×납입기간×12 ÷ 5년납이상: 기본보험료×납입기간×10(납입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함)  
 \* 기본형의 '기본사망보험금'은 계약체결시점의 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인출된 '기본사망 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 추가납입이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된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추가 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 직전 월계약 예정일 적립액의 110%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예정일의 적립액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예정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기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본형의 일시납입인 경우에는 기본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료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령으로 인한 사고 및 2년 이내 재발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연금액예시

[기준: 여자40세, 5년납, 60세연금개시, 기본보험료100만원, 1인생, 매년지급,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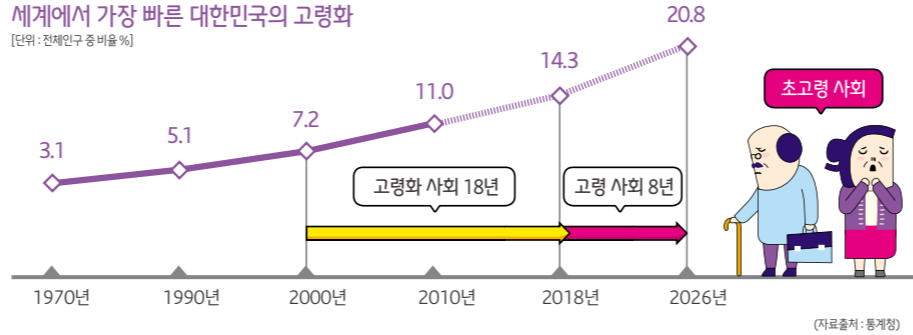
구분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5년이상 1.25%, 10년 이상 1.0%, 10년 초과 0.75%)	공시이율 연복리 2.50% M(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연복리 2.55% (공시이율)			
		1종 무사망형	2종 기본형	1종 무사망형	2종 기본형	1종 무사망형	2종 기본형
연금개시시 적립금	71,178	70,977	93,325	93,060	94,110	93,843	
중신 연금형	개인	10년 보증형	2,249	2,243	3,903	3,892	3,965
		20년 보증형	2,239	2,232	3,883	3,872	3,945
		30년 보증형	2,179	2,173	3,795	3,784	3,856
		100세 보증형	1,956	1,950	3,509	3,499	3,567
		기대여명보증형	2,214	2,208	3,846	3,835	3,907
확정 연금형	5년	14,377	14,337	19,501	19,445	19,683	
		10년	7,323	7,302	10,351	10,322	10,460
		15년	4,973	4,958	7,317	7,296	7,402
상속 연금형	20년	3,798	3,787	5,811	5,795	5,885	
		연금액	531	530	2,322	2,315	2,388
상속 연금형	상속지급	71,178	70,977	93,325	93,060	94,110	
연금개시시 지급금							
연금개시시 지급금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연액(2019년) 평균공시이율 (2.50%)과 가입시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가입시 공시이율(2019년 2월 적용 연복리 2.55%)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공시이율 변동시 실제 수령액은 표시된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최초 계약시 중신연금형으로만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기 예시금액은 연금지급형태를 변경시 지급되는 연금액을 예시한 금액입니다. \*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계약자가 연금지급형태(연금개시시 지급금 포함)중 최대 2가지로 선택가능하며 지정된 분할비율에 따라 동시에 지급됩니다. \* 연금개시시 지급금의 경우 연금개시시점 적립액의 0%~50%를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말하며, 최소 5년이상 보장합니다. \* 중신연금형(10년보증, 20년보증, 30년보증, 100세보증, 기대여명보증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동안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연금 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생사사유와 관계없이 확정연금 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시 이후 피보험자 사망시 그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생존연금도 변동됩니다. \* 100세보증형이란 [(101세-연금개시나이)년보증형]을 말합니다.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 및 생활자금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 + 1,000원"을 최저보증 합니다.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은퇴준비, 바로 지금 시작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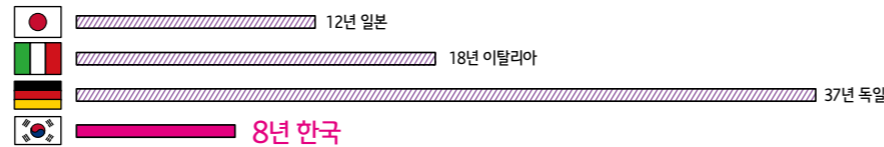
##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한민국의 고령화

[단위: 전체인구 중 비율 %]



(자료출처: 통계청)

## 초고령 사회 진입까지의 소요기간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 조기연금 개시

- 계약일 이후 10년이 지난 계약 또는 납입이 완료된 계약
-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던 때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상인 경우
- 조기연금개시 신청시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는 35세이상 85세이하 다만, 중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나이는 45세이상 85세이하 (중신연금형 중 부부형 선택은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이상 85세이하 이어야 합니다)
- 조기연금 개시 시점은 조기연금 개시 나이에 해당하는 연계약예정일로 합니다.

# 보험료납입 중지가능

-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50% 경과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예정일 이후 부터 계약자가 회사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여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정한사유: 퇴직/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다만, 보험료 납입유예를 1회이상 신청한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납 미만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중지를 신청한 시점부터 만기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납입은 가능)
- 보험료 납입중지 기간중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납입후 계약관련비용을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 적립형

[기준: 여자40세, 5년납, 60세 연금개시, 월보험료 100만원, 무사망형, 1인생(단위:천원, %)]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5년이상 1.25%, 10년이상 1.0%, 10년초과 0.75%)		공시이율 연복리 2.50% M(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연복리 2.55% (공시이율)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2,000	11,116	92.6%	11,193	93.2%	11,196	93.3%
3년	36,000	34,763	96.5%	35,436	98.4%	35,463	98.5%
5년	60,000	60,499	100.8%	62,396	103.9%	62,473	104.1%
7년	60,000	61,654	102.7%	65,493	109.1%	65,638	109.3%
10년	60,000	65,230	108.7%	72,236	120.3%	72,495	120.8%
15년	60,000	67,560	112.5%	81,567	135.9%	82,061	136.7%
20년	60,000	71,178	118.6%	93,325	155.5%	94,110	156.8%

## 가치형

[기준: 여40세, 50세 연금개시, 일시납보험료 1억원, 무사망형 (단위:천원, %)]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5년이상 1.25%, 10년이상 1.0%, 10년초과 0.75%)		공시이율 연복리 2.50% M(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연복리 2.55% (공시이율)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00,000	98,015	98.0%	99,229	99.2%	99,277	99.2%
3년	100,000	99,314	99.3%	103,070	103.0%	103,222	103.2%
5년	100,000	100,645	100.6%	107,105	107.1%	107,370	107.3%
7년	100,000	101,504	101.5%	111,345	111.3%	111,733	111.7%
10년	100,000	102,824	102.8%	118,111	118.1%	118,704	118.7%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연액(2019년)평균공시이율(2.50%)과 가입시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가입시 공시이율(2019년 2월 기준 연복리 2.55%)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 시 해지환급금도 변경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시이율은 매 1개월간 결정되며, 최저보증이율은 5년이상 연복리 1.25%, 10년이상 연복리 1.0% 10년 초과 연복리 0.75% 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입비(해지공제금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에 따라 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예시 금액은 35만원 초과금액에 한하여 보험료할인(또는 적립금가산)이 반영된 금액입니다.(적립형에 한함)  
 \* 상기 해지환급금은 세전 기준입니다.

## 직전 1년간 적용이율 변동현황

기준연월	2018. 3월	2018. 4월	2018. 5월	2018. 6월	2018. 7월	2018. 8월
적용이율	2.45%	2.45%	2.45%	2.45%	2.45%	2.45%
기준연월	2018. 9월	2018.10월	2018.11월	2018.12월	2019. 1월	2019. 2월
적용이율	2.45%	2.45%	2.45%	2.41%	2.55%	2.55%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 1개월간 확정 적용됩니다.  
 \* 적용이율 제공기간은 가입일계서를 제공하는 월의 직전 1년임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청약사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된 알뜰위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사전으로 일련된 중요한 사항(계약된 알뜰 사항)에 대해 사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된 알뜰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일련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보험금을 드리지 않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인한 사고 및 2년이상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피보험자의 위생적(양호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초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시보험료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의 정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청권을 받은 날부터 15일내에(청약을 인납부터 30일내에) 청약에 청약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지 확인 하십시오.** 청약의 할 때 약관 및 계약자보내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연월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종사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장부분에 사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5%입니다. 다만, 동이율은 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을 보충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이 상품 최저보충이율은 가입후 5년이상 연복리 1.25%, 10년이상 연복리 1.0%, 10년초과 연복리 0.75%입니다.
- **세제혜택** 보험차액(반기보통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예금저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 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특히 보험 제외) 예금저보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및 분령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시 신속이 해결해 드립니다. 당사보험상담안내 : 콜센터 1588-2286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소비자 보호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신청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전화: 국번없이 1332 서울본부: 02)3145-5114 부산지원: 051)606-1702 대구지원: 053)760-4000 광주지원: 062)606-1600 대전지원: 042)479-5151-4 춘천출장소: 033)250-2800 전주출장소: 063) 250-5000 제주출장소: 064) 746-4200 충주출장소: 043-857-9104 강릉출장소: 033-642-1902 [생명보험협회] 본사(대표전화): 02)2262-6600 수도권지역본부: 02)2262-6570 원주지부: 033)761-9672~3 대구지부: 053)427-8051, 421-1621, 427-2276 충북지역본부: 02)242-7002-4 노당지역본부: 062)350-0111-4 영남지역본부: 051) 638-7801~4 [방카생명본부] 02)2002-7880, 7464
-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http://www.heungkuklife.co.kr) (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 공식 : [www.klia.or.kr](http://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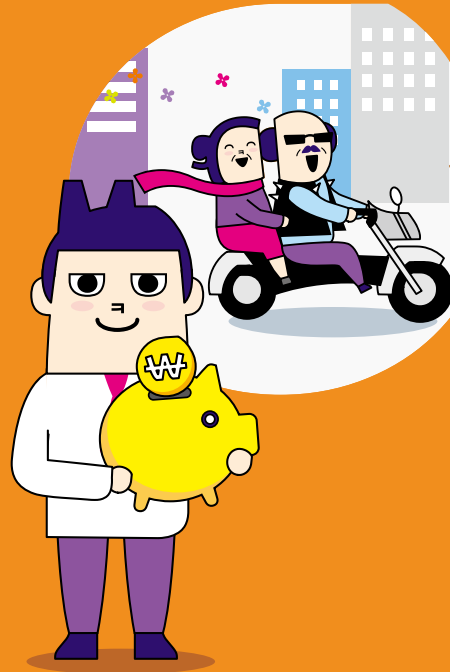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Tel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http://www.fss.or.kr))

보험사

**Heungkuk**  
흥국생명

무배당 흥국생명

**드림연금보험**  
1903



**Heungkuk**  
흥국생명

- 흥국생명 고객센터 콜센터 1588-2286
- 직원전화 1644-5611
- 흥국생명 방카영업본부 02-2002-7880, 7464

###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03184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신문로1가)  
02-2002-7000 [www.heungkuklife.co.kr](http://www.heungkuklife.co.kr)

제작일자 : 2019.02.25.

준법감시인 심의필19-FA6-000010(2019.02.25) 상품특정사자지

### 주요상품특징

사망보장



자금활용



노후연금



## 상품특징

### 1. "0"세부터 가입가능(1종 무사망형)

- 자녀를 위한 설계가능
- 최고75세까지 가입가능
- 생활자금인출가능

### 2. 연금개시전 사망보험금보장(2종기본형)

- 기본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 3년납 : 기본보험료 x 납입기간 x 12
  - 5년납이상 : 기본보험료 x 납입기간 x 10 (납입기간은 최대10년)
  - ex) 월보험료 100만원, 5년납 가입시 : 5천만원
- 은퇴전 경제 활동기에 보장 강화

### 3. 법인계약 피보험자 변경가능

- 보험기간 중 법인계약에 한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퇴직시 피보험자 변경 가능
  - ※ 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유동성 기능(추가납입보험료 / 중도인출)

-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을 활용하여 다양한 플랜이 가능
- 상속연금형일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도 가능

### 5. 장기유지보너스

구분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장기유지보너스	
		3년납	5년납 이상
적립형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시점의 계약예당일	0.50%	2.50%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시점의 계약예당일	0.50%	3.00%
	연금지급개시 나이의 계약예당일 (다만,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0.2% x min (20, 연금개시나이-가입나이-10)	
거치형	연금지급개시 나이의 계약예당일	2.50%	

※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은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입니다.

### 6. 보험료할인/적립금산 혜택

- 기본보험료
  - 35만원 이상시 35만원 초과액의 1.6%
  - 50만원 이상시 기본보험료의 0.4%+50만원 초과액의 0.9%
  - 100만원 이상시 기본보험료의 0.8%+100만원 초과액의 0.45%
  - 300만원 이상시 기본보험료의 1.10%

### 7.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로 안정적인 연금자산 마련

- 2019년 2월 공시이율 연복리 2.55%
- 최저보증이율 5년이내 1.25% 10년이내 1.0% 10년초과 0.75%

### 8.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 연금수령시에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혜택  
(다만, 확정연금형의 경우 10년이내 연금 수령시 세금부과)

## 가입안내

### 납입기간 및 연금개시나이

구분	납입기간	연금개시나이
1종(무사망형)	3년, 5년, 7년, 10년-(연금지급개시나이-가입나이)년	45세 ~ 85세
2종(기본형)	일시납, 3년, 5년, 7년, 10년, 12년, 15년, 20년납	45세 ~ 85세

\*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후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인 경우 연금개시 나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2종(기본형) 20년납의 경우 85세 이후 연금개시 불가.

### 가입나이

구분	적립형	거치형
1종(무사망형)	0세~최대 75세(단, 10년 이상은 0세 ~ 73세까지)	
2종 기본형	일시납	만 15세 ~ 70세
	3년납	15세 ~ 69세
	5년납	15세 ~ 65세
	7년납	15세 ~ 59세
	10,12년납	15세 ~ 55세
	15년납 이상	15세 ~ 59세

###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일시납

#### 기본보험료

- 일시납 : 300만원 이상
- 월납 : 3년납 60만원, 5년~12년납 25만원, 15년납 이상은 15만원

## 추가납입·중도인출·선납가능

### 추가납입(적립형, 거치형)

-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 성립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입니다.  
(다만, 연금지급형태가 상속연금형일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도 가능 합니다)

#### 납입한도

- 적립형: [(기본보험료 x 가입후 경과월수)+선납보험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 거치형: 기본보험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납입중지기간' 및 '납입유예 기간'은 '가입후 경과월수'에서 제외함  
\* 중도인출금액 부분에 대한 추가납입에 대해서는 기타비용만 부과(최대만도 3만원)

※ 추가납입 시 사립비가 차감됩니다.

### 중도인출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 (다만, 보험 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만원 이상 가능하며, 인출시 수수료는 없음. (다만, 연금지급형태가 상속연금형일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도 가능함)
- 인출 후 해지환급금이 적립형은 1구최대 200만원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30% 중 작은 금액 이상, 거치형은 일시납보험료의 20%이상이어야 함.

※ 중도인출시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장애에 해지환급금에서 부가사 업비를 중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선납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가능, 선납보험료는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당에 납입예당일에 대체합니다.

# 보장 및 연금액 예시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종류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1종 무사망형	80% 이상 재배정에 보험금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장애 분류 표 중 동일한 장애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만)	1,000만원
2종 기본형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기본사망보험금'과 직전 월계약 해당일 적립액의 110%중 큰금액

\* 적립액이란 계약의 연금계약순보험료(연원보험료에서 보장액 순보험료 및 계약사입비용 번 금액)를 공시이율로 하여 납입일로부터 경과시점까지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는 차감합니다.  
 \* 무사망형은 사망이 아닌 납입 보험료(중도인출을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와 사망당시의 적립액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본사망 보험금(기본형)  
 - 3년납 : 기본보험료×납입기간×12 ÷ 5년납이상 : 기본보험료×납입기간×10(납입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함)  
 \* 기본형의 '기본사망보험금'은 계약해지시점의 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인출전 '기본사망 보험금'에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 추가납입이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된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추가 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 직전 월계약 해당일 적립액의 110%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적립액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본형의 일시납금 경우에는 기본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료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연금예시

[기준: 여자40세, 5년납, 60세연금개시, 기본보험료100만원, 가산형, 매년지급, 단위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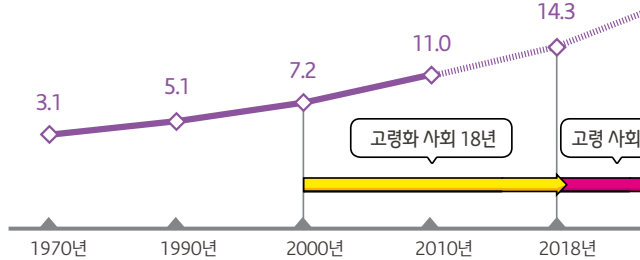
구분	최저보장이율적용시 (5년이상 1.25%, 10년 이상 1.0%, 10년 초과 0.75%)	공시이율 연복리 2.50% Min(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연복리 2.55% (공시이율)				
		1종 무사망형	2종 기본형	1종 무사망형	2종 기본형	1종 무사망형	2종 기본형	
연금개시시 적립금								
		71,178	70,977	93,325	93,060	94,110	93,843	
중신 연금형	개인	10년 보증형	2,249	2,243	3,903	3,892	3,965	3,953
		20년 보증형	2,239	2,232	3,883	3,872	3,945	3,934
		30년 보증형	2,179	2,173	3,795	3,784	3,856	3,845
		100세 보증형	1,956	1,950	3,509	3,499	3,567	3,557
		기대여명보증형	2,214	2,208	3,846	3,835	3,907	3,896
확정 연금형		5년	14,377	14,337	19,501	19,445	19,683	19,627
		10년	7,323	7,302	10,351	10,322	10,460	10,431
		15년	4,973	4,958	7,317	7,296	7,402	7,381
		20년	3,798	3,787	5,811	5,795	5,885	5,868
상속 연금형	연금액	531	530	2,322	2,315	2,388	2,381	
	상속자금	71,178	70,977	93,325	93,060	94,110	93,843	
연금개시시일시금		연금개시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연금개시일시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장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연세(2019년) 평균공시이율 (2.50%)과 가입시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가입시 공시이율(2019년 2월 적용 연복리 2.55%)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공시이율 변동시 실제 수령액은 표시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최초 계약시 중신연금형으로만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기 예시금액은 연금지급형태를 변경시 지급되는 연금액을 예시한 금액입니다. \*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계약자가 연금지급명태(연금개시일시금 포함)중 최대 2가지로 선택가능하며 지정한 분할비율에 따라 동시에 지급됩니다. \* 연금지급시점의 경우 연금개시시점 적립액의 0%~50%를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실 고시)에 따른 평균,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말하며, 최소 5년이상 보증합니다. \* 중신연금(10년보증, 20년보증, 30년보증, 100세보증, 기대여명보증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기간간에는 사망이 없는 보증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연금 지급기간 동안 사망이 없는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연금 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후 피보험자 사망시 그 사망의 책임비용을 지급합니다. \*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지만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100세보증형이란 [(101세-연금개시나이)년보증형]을 말합니다.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 및 생활자금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 + 1,000원"을 최저보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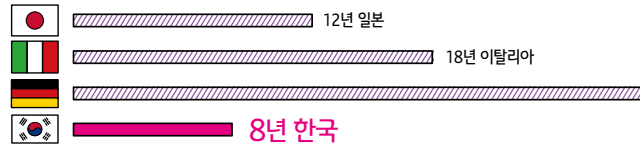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은퇴준비, 바로 지금 시작

##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한민국의 고령화

[단위: 전체중구 중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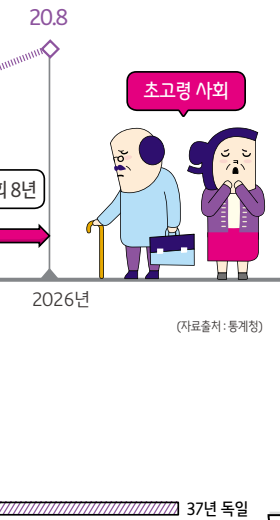


## 초고령 사회 진입까지의 소요기간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 조기연금 개시

- 계약일 이후 10년이 지난 계약 또는 납입이 완료된 계약
-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던 때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상인 경우
- 조기연금개시 신청시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는 35세이상 85세이하  
 다만, 중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나이는 45세이상 85세이하  
 (중신연금형 중 부부형 선택은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이상 85세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 조기연금 개시 시점은 조기연금 개시 나이에 해당하는 연계약해당일로 합니다.



**Step 1.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초과  
우리나라는 2000년 7월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

**Step 2. 고령 사회 (Aged Society)**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초과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

**Step 3. 초고령 사회 (post-aged Society)**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초과  
고령사회가 된 지 8년 만인 2026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 예상

## 보험료납입 중지기능

-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50% 경과후 최초로 드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이후 부터 계약자가 회사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여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정한사유 : 퇴직/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다만, 보험료 납입유예를 1회이상 신청한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납 미만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중지를 신청한 시점부터 만기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납입은 가능)
- 보험료 납입중지 기간중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납입후 계약관련비용을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 적립형

[기준: 여자40세, 5년납, 60세 연금개시, 월보험료 100만원, 무사망형, 가산형(단위:천원, %)]

경과 기간	최저보종이율 가정시 (5년이내 1.25%, 10년이내 1.0%, 10년초과 0.75%)		공시이율 연복리 2.50% (Min(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연복리 2.55% (공시이율)		
	납입 보험료	해지환급금	원금률	해지환급금	원금률	해지환급금	원금률
1년	12,000	11,116	92.6%	11,193	93.2%	11,196	93.3%
3년	36,000	34,763	96.5%	35,436	98.4%	35,463	98.5%
5년	60,000	60,499	100.8%	62,396	103.9%	62,473	104.1%
7년	60,000	61,654	102.7%	65,493	109.1%	65,638	109.3%
10년	60,000	65,230	108.7%	72,236	120.3%	72,495	120.8%
15년	60,000	67,560	112.5%	81,567	135.9%	82,061	136.7%
20년	60,000	71,178	118.6%	93,325	155.5%	94,110	156.8%

### 거치형

[기준: 여자40세, 50세 연금개시, 일시납보험료 1억원, 무사망형 (단위:천원, %)]

경과 기간	최저보종이율 가정시 (5년이내 1.25%, 10년이내 1.0%, 10년초과 0.75%)		공시이율 연복리 2.50% (Min(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연복리 2.55% (공시이율)		
	납입 보험료	해지환급금	원금률	해지환급금	원금률	해지환급금	원금률
1년	100,000	98,015	98.0%	99,229	99.2%	99,277	99.2%
3년	100,000	99,314	99.3%	103,070	103.0%	103,222	103.2%
5년	100,000	100,645	100.6%	107,105	107.1%	107,370	107.3%
7년	100,000	101,504	101.5%	111,345	111.3%	111,733	111.7%
10년	100,000	102,824	102.8%	118,111	118.1%	118,704	118.7%

-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종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연체(2019년)평균공시이율(2.50%)과 가입시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가입시 공시이율(2019년 2월 기준 연복리 2.55%)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 시 해지환급금도 변경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공시이율은 매 1개월간 결정되며, 최저보종이율은 5년이내 연복리 1.25%, 10년이내 연복리 1.0% 초과 연복리 0.75%입니다.
-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기간의 위험보험료, 사비비(예지공제금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종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 상기 금액은 35만원 초과금액에 한하여 보험료할인(또는 적립기간)이 반영된 금액입니다.(적립형에 한함)
- \* 상기 해지환급금은 세전 기준입니다.

### 직전 1년간 적용이율 변동현황

기준년월	2018. 3월	2018. 4월	2018. 5월	2018. 6월	2018. 7월	2018. 8월
적용이율	2.45%	2.45%	2.45%	2.45%	2.45%	2.45%
기준년월	2018. 9월	2018.10월	2018.11월	2018.12월	2019. 1월	2019. 2월
적용이율	2.45%	2.45%	2.45%	2.41%	2.55%	2.55%

-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 1개월간 확정 적용됩니다.
- \* 적용이율 제공기간은 가입설계서를 제공하는 월의 직전 1년임